

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주무관청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는 기존 조문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재량으로 변경하고, 필요시 주무관청이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서류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심사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사무처리 대상 고유식별번호의 범위를 축소하여 주무관청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법령의 통일성을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무처리 대상 고유식별번호의 범위 조정(안 제3조, 제13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자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개정

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의 재량권 명시(안 제4조제1항)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주무관청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는 기존 규정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재량으로 변경

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심사절차 보완(안 제4조제3항)

설립허가의 적정성 판단 등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주무관청이 신청인에게 추가자료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성명·생년월일·주소 및”을 “성명·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주소 및”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하여야 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월”을 “2개월”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을 “제19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등기소나 금융기관에서 재산의 이전을 확인한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허가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

--- 1개월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
-- 2개월 -----

--.

1. ~ 3. (생 략)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u>국</u> <u>방부장관</u>은 다음 각 호의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u>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u> <u>등록번호</u>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 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u>주</u> <u>무관청</u>----- ----- ----- --- 제19조제4호에 따른 ---- ----- ----- -----. 1. ~ 5. (현행과 같음)
---	---